

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30 선고 2015가단1315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학교법인 국민학원

피 고 A

변론 종결 2016. 8. 17.

판결 선고 2016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서울 성북구 B 임야 4,37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55, 56, 57, 58, 59, 60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36㎡를 철거하고,

나. 서울 성북구 B 임야 4,374㎡ 중 별지 도면 표시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4,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9㎡와 별지 도면 표시 54, 50, 51, 52, 53,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) 부분 41㎡을 각 인도하고,

다. 140,962,680원 및 2016. 6. 17.부터 위 나항 기재 대부분 259㎡의 인도일까지 연 12,181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라. 18,727,570원 및 2016. 6. 17.부터 위 나항 기재 타부분 41㎡의 인도일까지 연 1,557,5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임야 4,374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, 56, 57, 58, 59, 60,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136㎡에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4,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대부분 259㎡와 별지 도면 표시 54, 50, 51, 52, 53,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㎡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, 2005. 8. 17.부터 2016. 6. 16.까지 위 4부분 259㎡의 임료는 140,962,680원, 위 4부분 41㎡의 임료는 18,727,570원이며, 2016. 6. 16.을 기준으로 위 4부분 259㎡의 연간 임료는 12,181,800원, 위 4부분 41㎡의 연간 임료는 1,557,5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상 7부분 미등기 건물 136㎡를 철거하고, 대부분 259㎡와 타부분 41㎡을 각 인도하고, 대부분 259㎡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140,962,680원 및 2016. 6. 17.부터 대부분 259㎡의 인도일까지 연 12,181,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대부분 41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으로 18,727,570원 및 2016. 6. 17.부터 대부분 41㎡의 인도일까지 연 1,557,55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창현

별 지 도 면

